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03
----------	-------

발의연월일 : 2026. 7. 22.

발 의 자 : 임종득 · 서천호 · 이상휘
김용태 · 김태규 · 김승수
김정재 · 김기현 · 김성원
윤상현 · 김상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최근 인구감소 추세와 함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의 보건복지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경우 그 실시 주기가 5년인데, 이는 다소 길어서 농어촌의 인구구조 및 보건복지 수요 등의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어촌 거주 가구 중에서 아동 · 노인 · 장애인 가구, 가족돌봄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신체적 · 경제적 ·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안

전사고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시설 응급상황 발생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응급조치로 연결될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공백이 있더라도 응급상황에 상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 거주 가구 중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노인 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 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한 가구에 대하여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농어촌 거주 가구 중 아동·노인·장애인 가구, 가족돌봄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이하 “안전사고 취약가구”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주거시설에서의 응급상황 발생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화재진압, 인명 구조·구급 등의 조치와 연계하는 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안전사고 취약가구 구성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안전사고 취약가구 구성원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안전사고 취약가구의 구성원 본인 또는 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또는 그 밖에 노인·장애인 돌봄 전문인력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해당 가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2.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가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인 사람만으로 구성된 가구
-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의 내용·기준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실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u>5</u> 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 ----- ----- ----- <u>3년</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26조의2(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농어촌 거주 가구 중 아동·노인·장애인 가구, 가족돌봄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이하 “안전사고 취약가구”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주거시설에서의 응급상황 발생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화재진압, 인명 구조·구급 등의 조치와 연계하는 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안전사고 취약가구 구성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안전사고 취약가구 구성원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안전사고 취약가구의 구성원 본인 또는 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또는 그 밖에 노인·장애인 돌봄

전문인력으로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 중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가구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
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해당 가구
에 제공하여야 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
성된 가구

2.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가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는 사람과 미성년자인 사람으
로만 구성된 가구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의 내용·기준 및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